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0
------------	-----

2026. 4. 1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전혜연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적심사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포상과 관련한 제도적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이었던 심사위원의 외부 민간위원 위촉과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적 심사의 내부 통제 절차 강화에 따른 포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1
------------	-----

2026. 4. 1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이진환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안 제14조제10항)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중복규정 삭제(안 제14조제8항)

☐ 준용규정 신설(안 제18조)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3)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차 공무원에게 조직생활의 적응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추가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912
------------	-----

2026. 4. 1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이진환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 및 시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출장 제한 규정 강화(안 제4조제1항)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포함 의무화(안 제5조제2항)
-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 의뢰 명문화(안 제13조제5항)
- 출장자의 의무 및 보호 조치 규정(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08.)]에 따라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및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에 사회단체 대표 등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출장자의 의무와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조사와 감사 의뢰를 의무화를 통해 우리시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 사항으로써,
-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입법형식과 내용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913
------------	-----

2026. 4. 1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전혜연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규칙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근거 정비(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근거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 내역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서 검토 결과,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